

대법원 2016. 9. 29 선고 2016다23025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

안AA

피고, 상고인

1. 한BB

2. 대한민국

제1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09. 10. 선고 2014가합562190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2016. 9. 29.

판 결 선 고

2016. 9. 29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